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241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소외 B(C생)과 소외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 1) B은 2019. 2. 19.부터 2019. 5. 9.까지 B이 운영하는 'F'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9. 4. 15. 세무서에 2013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61,263,220원 및 종합소득세 377,666,970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 2) 이에 B에게, 분당세무서장은 2019. 6. 3. 종합소득세 377,666,970원을,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9. 6. 7. 부가가치세 161,263,220원을 각각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9. 6. 26.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D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244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D은 2020. 3. 11. B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1,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107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D 및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도 각각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의 이유로 피고가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의 자녀로서 B이 운영하던 F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F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3. 25. F과 동종 업체인 'G'을 창업하면서 D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과 D 사이에 2019. 6. 26.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운

별지

목 록

1.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임야 229㎡

지분의 표시 229분의 66 지분 전부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

